

거 래 처 별 자 기 자 본 의 10% 초 과 신 규 부 실 대 출 발 생

(단 위 : 백 만 원)

거 래 처	대 출 일 자	부 실 대 출 금 액 (A)	부 실 발 생 일	자 기 자 본 (B)	자 기 자 본 대 비 부 실 대 출 비 율 (%) (A/B)*100	비 고
박혜숙	2010.09.30	4,991	2016.06.30	37,754	13.22%	

기재상의 주의

주)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(거래처별 신규 부실대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) 공시